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 27 문팔갑의원외 6

나. 회 부 일 자 : 2000. 1. 31

다. 상 정 일 자 : 2000. 1. 31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중구 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의정 환성회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대통령령 제16672호, '99. 12. 13) 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제명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
- 군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 350,000원에서 월 550,000원으로 인상함. (안 제6조)
- 회기중 회의출석시 지급하던 "회의수당" 을 "회기수당" 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1일 참석수당을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 (안제6조, 안제3조, 제7조)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기준단가 인상 (별표1, 별표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찬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 12. 31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1일 참석수당을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며,

○ 국내, 국외 여비는 기준단가에 의해서 인상하므로서 관련법규의 저촉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3조 제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5조 제1항 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한다.

제6조중 의정활동비를 "원 350,000원"을 "원 550,000원"으로 한다.

제7조 제목 및 내용 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하고 "55,000원"을 "70,000원"으로 한다.

제10조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별표1] 과 [별표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료 (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의원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22,000	18,000

1. 화순군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화순군내라 하더라도 벽지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일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 제2항 관련)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 · 부의장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1 등 정액		가등급 25 나등급 25 다등급 25 라등급 25	가등급 137 나등급 99 다등급 76 라등급 65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49 라등급 49	140	170	195
의원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 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20 나등급 20 다등급 20 라등급 20	가등급 120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51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u>회기</u> <u>수당</u> - - - - - - - - - - .</p>
<p>제3조 (회의수당 지급) ①의원이 회기 중에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 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 (회의수당 지급) ①회의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p>
<p>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p>	<p>②회의수당 - - - - - - - - - - .</p>
<p>제5조 (여비의 종류) ①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u>일비</u>, <u>숙박료</u>, 식비로 구분한다.</p>	<p>제5조 (여비의 종류) ① - <u>현지교통비</u>- - - - - - - - .</p>
<p>②기재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장자료수집, 연구비로 <u>월 350,000원</u>을 지급한다.</p>	<p>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 - - - - - - - - - - - - - - <u>월 550,000원</u> - - - - - - .</p>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7조 (<u>회의수당 지급기준</u>) 의원에게 지급하는 <u>회의수당</u>은 출석일수 1일에 <u>50,000원</u>으로 한다.</p>	<p>제7조 (<u>회기수당 지급기준</u>) - - - - - - - - - - <u>70,000원</u> - - - - -</p>
<p>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 <u>회의수당</u>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u>화순군 공무원의 예</u>에 따른다.</p>	<p>제10조 (준용) - - - - - - - - - - <u>회기수당</u> - - - - - - - - - -</p>

화순군의회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요약)

1.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지급액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의정활동비	월 350,000 원	월 550,000 원	
회기수당	일 50,000 원	일 70,000 원	

2. 여비 지급기준 인상

○ 국내여비 숙박료 단가인상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현지 교통비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현지 교통비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0,000	41,000	25,000	10,000	41,000	25,000	
의 원	10,000	19,500	18,000	10,000	22,000	18,000	

○ 국외여비 숙박료 인상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현지 교통비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현지 교통비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25	가등급 130	가등급 107	25	가등급 130	가등급 107
		나등급 90	나등급 78		나등급 99	나등급 78
		다등급 72	다등급 58		다등급 76	다등급 58
		라등급 62	라등급 49		라등급 65	라등급 49
의 원	20	가등급 114	가등급 81	20	가등급 120	가등급 81
		나등급 74	나등급 59		나등급 78	나등급 59
		다등급 56	다등급 44		다등급 58	다등급 44
		라등급 46	라등급 37		라등급 51	라등급 37